

# 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06,559,815	15,196,794
일반회계	496,430,129	14,892,904
특별회계	10,129,686	303,891
기타특별회계	10,129,686	303,891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341,000	10,230
의료급여기금	521,825	15,655
주차장	9,266,861	278,006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052,320천원(일반 3,800,000, 재해·재난목적 252,320)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"16,600,000천원"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